

교직원 창업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1. 7. 1 개정 2008. 6. 1
개정 2004. 3.18 개정 2015. 7.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교직원의 창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본 대학 창업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부서) 본 대학 교직원의 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처의 창업지원 담당부서(이하 “운영부서” 라 한다) 에서 처리한다.

제3조(신청서 제출) ① 창업규정 제5조에 의거 창업활동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별지1의 창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과 협의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별지2의 창업기업의 개요, 향후 추진계획, 대학투입분 요청내역,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보완계획서, 창업에 참여하는 인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15.7.1.)

④ 소속부서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협약체결) 창업 교직원은 규정 제6조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학과 재정적 기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5조(창업관련 활동 제외자) (삭제: 2008.6.1)

제6조(지원에 따른 가치산출) ① 규정 제3조 제3호에 대한 대학 투입분의 가치산출은 신청서를 기초로 하여 창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와 창업활동 교직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시 대학 투입분의 가치를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산출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은 제1항에 의해 산출된 가치에 대한 사용료 등을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의한다.

제7조(창업겸직 또는 창업휴직 신청서 제출) ① 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겸직 또는 휴직하는 교직원은 별지4 및 별지5의 창업겸직 또는 휴직신청서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겸직 또는 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나 기간종료전이라도 종료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별지6의 창업겸직 또는 창업휴직 종료신청서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는 승인된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자료제출) ① 대학은 창업교직원에게 대학의 업무 수행상 참고가 될 대차대조표, 주주 및 지분을 변동사항, 대학참여 인원변동현황 및 연구용역수주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교직원은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닌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직원이 창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학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상기 1항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교직원은 응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심의위원회) (삭제: 2004.3.18)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행정처리는 세칙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1)

창업신청서

창업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번	성명	전화	
회사 개 요	회사명					
	사업장주소					
	설립일 (예정일)	()	주생산품			
	자본금	만원	총발행주식	주, 액면가 :	원	
	설립형태	(주식회사, 개인기업 *개인기업의 경우 주식회사 전환계획 기재)				
주요주주 및 경영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차입금/담보	거래은행			대출과목		
	담보내용			차입금		
첨부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창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서장 : (인)

(별지 2)

사 업 계 획 서

20

회 사 명
(예 비 창 업 자)

1. 창업동기 및 회사개요

창 업 동 기	
회 사 개 요	
사 업 화 기 술 개 요	

2. 향후 추진계획

내 용	년도		년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3. 대학투입분 요청내역

구 분	요 청 내 용
시설사용면적(평)	
비품 등	
연구기자재	
지적재산권 및 Know-How 등	
기 타	

4. 소속부서의 업무공백 보완계획서

대 상 업 무	현 재	보 완 계 획
<p>담당하던 필수과목 강의계획</p>	<p>※ 주당 수업 시수 및 과목 등</p>	
<p>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계획</p>	<p>※ 학부 및 대학원 지도학생수 및 지도계획</p>	
<p>수행중인 연구 과제 계획</p>	<p>※ 주요연구과제 수행현황(금액)</p>	
<p>봉사활동 계획</p>	<p>※ 대학 내 주요보직 수행현황(계획)</p>	

5. 창업자 및 창업관련활동자 계획

구 분	소 속	신 분	성 명	참여범위	비 고
창업자(대표자)					

(별지 3)

재정적 기여 계획서

구 분	기 여 내 용
창업기업	

- ※ 1. 창업기업의 기여계획을 기술
- 2. 창업승인 후 15일 이내에 대학과 별도 협약 체결

(별지 4)

창업휴직 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창업기업				회사직위	
창업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휴직신청사유					
<p>위와 같이 창업휴직을 신청합니다.</p> <p>200 년 월 일</p> <p>신 청 인 : (인) 소속부서장 : (인)</p> <p>교무처장 귀중</p>					

(별지 5)

창업겸직 신청서

(별지 6)

창업겸직(휴직) 종료신청서

1. 성명 :

2. 소속 :

3. 직위 :

4. 참여기업 및 직위 :

5. 종료사유 :

6. 종료일자 :

본인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직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겸직
(휴직) 종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소속부서장 : (인)

교무처장 귀하